

「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설치, 운영,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이용시간, 휴관일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- 라. 이용 신청·제한, 이용료, 수강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1조)
- 마. 시설의 보호, 손해배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, 제13조)
- 바. 지도·감독, 준용,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~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,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구미시 물품관리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경상북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관내 여성의 취·창업 및 공동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용시간이 원칙적으로는 평일 18시로 제한되어 있고, 센터의 휴관일을 ‘토요일’로 규정한 것(제6조제1호)은 직장인 여성 등의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운영 시에는 수요자 중심의 보다 탄력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권장됨.
- 집행기관은 향후 센터가 여성친화도시 구미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내실 있는 위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